

의안번호	제 202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7월 일 (제 341 회)

**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임회무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6월 23일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회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6월 23일

발 의 자 : 임회무, 김영주, 엄재창
연철흠, 윤은희, 최광옥
박병진

1. 개정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
-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와 지상변압기함을 추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입간판 표시방법을 신설(안 제10조의 2)
- 나.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, 지상변압기함을 추가(안 제11조)
- 다.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서 “지상변압기함” 을 삭제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, 제24조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: 2015. 6. 8 ~ 2015. 6. 18
- 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의 2(입간판의 표시방법) ①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1. 영 제 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.
 2.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3.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.2미터 이하, 1면의 면적은 0.6제곱미터 이하, 간판의 합계면적은 1.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체형·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 4.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,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,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
 5.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.
- ③ 태풍·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영 제17조제1호 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휴지통
2. 벤치
3. 공공자전거보관대
4.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
5. 지상변압기함
6. 그 밖에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편의시설물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) 영 제24조제1항제2호 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횡단보도안전표시등
2. 가로등 자동점멸기함
3. 지하철 · 지하도 ·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
4. 교통안전시설물
5. 낙석방지시설물
6. 방음벽 · 석축 · 옹벽 및 계단
7. 도로(인도를 포함한다)의 노면
8. 도로명 안내시설물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신설)	<p>제10조의 2</p> <p>제10조의 2(입간판의 표시방법)</p> <p>①영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영 제 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. 2.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3.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.2미터 이하, 1면의 면적은 0.6제곱미터 이하, 간판의 합계면적은 1.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체형·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)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영 제17조 제1호 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4.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,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,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5.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.</p> <p>③ 태풍·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.</p> <p>제11조(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)의 추가적인 표시방법)(생략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편익시설물</p> <p>제20조(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) 영 제24조제1항제2호 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지상변압기함</p> <p>9. 도로명 안내시설물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</u> (신설)</p> <p>5. <u>지상변압기함</u> (신설)</p> <p>6. 그 밖에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편익시설물</p> <p>제20조(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) 영 제24조제1항제2호 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(삭제)</u></p> <p>8. 도로명 안내시설물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
제3조(옥외광고물의 분류) 옥외광고물(이하 "광고물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 <개정 2014.12.9.>

6의2. 입간판: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, 아크릴 또는 조레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

제24조(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)

2.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

가. 도로표지·교통안전표지·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

나. 전봇대

다. 가로등기둥[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기둥에 가로등 현수기(懸垂旗)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

라. 가로수

마. 동상 및 기념비

바. 발전소·변전소·송신탑·송전탑·가스탱크·유류탱크 및 수도탱크

사. 우편함·소화전 및 화재경보기

아. 전망대 및 전망탑

자. 담장(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)

차. 재배 중인 농작물

카.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